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1/2565호

투자 활성화 방안

투자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2014년 12월 3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2/2557호와 관련하여, 투자 유치 대상인 산업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빠르게 투자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제18조 그리고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을 고시하는 바이다.

1. 모든 쟁왓(태국의 행정구역으로 province에 해당함)을 투자촉진 구역으로 명시한다.
2. 조건
 - 2.1 프로젝트는 A1, A2 및 A3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항공운송 서비스, 해상운송 서비스 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장이 없는 활동
 - (2) 남부 국경지방 또는 특별경제구역에 필수적으로 입주해야 하는 조건의 활동
 - 2.2 프로젝트는 여러가지 투자촉진방안에 따라 총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법인세 면제 혜택과 권리를 받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 2.3 프로젝트는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10억 바트 이상(토지대금과 운영자본 제외)의 실제 투자가 있어야 한다.
 - 2.4 투자촉진 수락과 촉진 인증 발급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의 기간 연장은 불가하지만, 기계 수입과 완전조업 개시 기한은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 2.5 투자청에서 정한 추가 혜택과 권리를 신청하기 위해 투자촉진증 발급일로부터 18개월 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투자의 증빙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은 적합성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른 추가 권리 및 혜택 신청일 당시, 법인세 면제 권리 및 혜택에 대한 기한 및 한도는 모두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한다.
3. 추가 권리 및 혜택

법인세 면제 완료일로부터 5년간 투자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 비율에서 50% 감면

4. 이 고시는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된 투자촉진 신청서에

적용된다.

5. 투자청은 이 방안에 따라 추가 권리와 혜택을 받기 위한 모든 투자규모의 프로젝트 수정에 대한 승인 여부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적합한 추가 권리와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투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연장에 관한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고시는 2022년 1월 4일부터 유효하다.

고시일 2022년 2월 21일

쁘라윿 짬오차 장군(General Prayut Chan-ocha)

(쁘라윿 짬오차(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위원회 의장